

2023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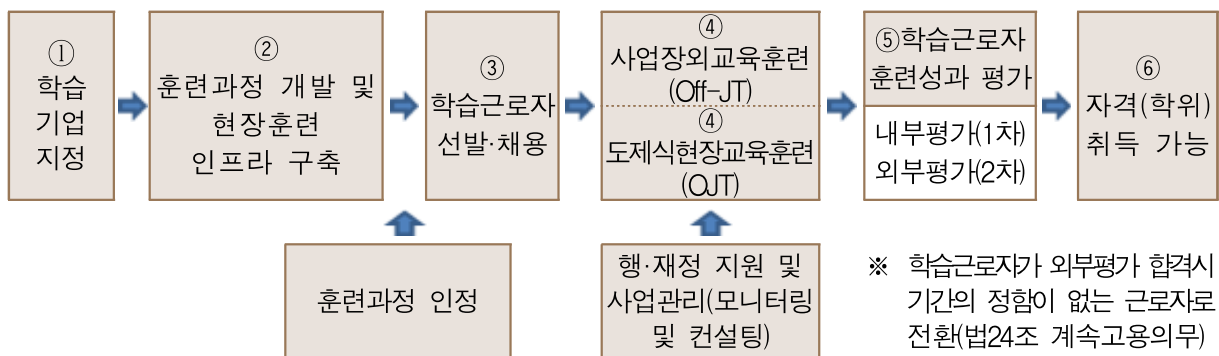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 후 자격 부여



나. (학습기업 준수사항)

-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훈련 대상자는 신규채용자 등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인 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별첨4 참조),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훈련 중 또는 종료 후에 실시하고, 산업형과정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다. (훈련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 반복 직무는 제외

- 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및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 NCS 24개 대분류 현황(NCS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01. 사업관리	 02. 경영 회계 사무	 03. 금융 보험	 04. 교육·자연·사회 과학	 05. 법률·경찰·소방 제도·직업	 06. 보건 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 영상
 09. 운송 운송	 10. 영업 판매	 11. 정보·방송	 12. 이용·숙박·여행 모락 서비스	 13. 음식 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래
 17. 화학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 가공	 22. 안주·가구·가구 공예	 23. 환경·에너지·자연 과학	 24. 관광·여행

※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참조

라. (참여유형) 크게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로 구분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외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재직자 단계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직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 단 P-tech 유형은 별도 기준에 따름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기업
②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전문대 재학생(전문대 재학생단계), 4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IPP형) 대상으로 실시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직자 단계) 사업장 외 교육훈련 수행 주체에 따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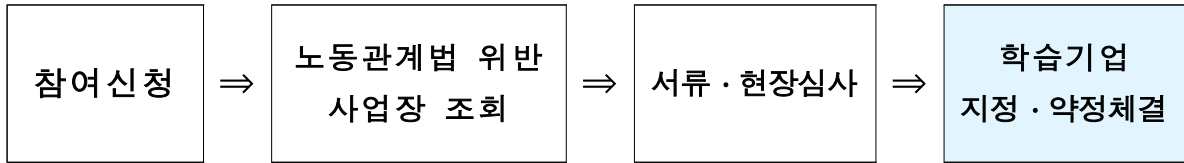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 외 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단독기업형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계약 별도 체결)	기업
② 공동훈련 센터형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③ P-TECH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학생 단계) 학습근로자 신분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공동훈련센터형으로만 참여 가능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 외 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고교 단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2~3학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특성화고)	기업
②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단계> 전문대 최종학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문대)	기업
③ <대학교 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4년제 대학 3~4학년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4년제 대학)	기업

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학습기업 지정절차 >



가. 모집시기 : 연중 상시

나. 신청 방법

-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털) 외부행정시스템 접속
 -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선택한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부·지사(별첨1)로 자동 접수
-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도제학교 사업단과 협약 체결 후, 협약 기관의 지원 하에 학습기업에서 HRD-Net에 신청서 작성

* 공동훈련센터 및 사업단 목록은 (별첨2) 참조

신청방법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단독기업형 신청시	① 훈련기관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행정지원 이용신청 및 승인 후 → ③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 ④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에 정보입력
	공동훈련센터형 신청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일학습병행 참여신청 → ③ 협약기업신청서 탭에서 정보 입력

다. 기본요건

○ 기업지정요건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

순번	지정요건	조항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제1항 1~3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제1항 4~6호
5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법 제13조제2항 2호 영 제8조제2항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상시근로자 수 기준(백일) [규정 별표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 전산의 사업장 기준과 동일)
- 학습기업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참여 가능

순번	요건
1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 추천기업

※ (참고) 지정취소 등의 요건 [법 제14조,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제5조]

- 학습기업이 기업지정요건을 갖추고 일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후에도 아래 지정 취소 등의 요건에 의해 지정취소될 수 있음

순번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학습기업이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3	학습기업 지정 이후 임금체불 발생한 사업장. 단,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에 한함
4	학습기업 지정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한함

- 학습기업의 지정요건 1~2호 및 지정취소 등의 요건 3~4호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사실 적발 시 지정 불가 또는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조치

- 학습기업 사업주 준수사항 [법 제25조, 미준수시 과태료 대상]

조항	요건
1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없이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지정 하고, 기업현장교사가 교육훈련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의 근무조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하여야 한다.
4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학습근로자가 자신의 교육훈련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5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실습재료, 개인용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6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라. 제출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참여신청시 입력·첨부	서식1,2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입력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서식)	전산첨부
	서식4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서 (공동훈련센터형만 해당)	전산첨부
현장심사시 확인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 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등)	전산 또는 현장 확인 (필요시 증빙 가능)

-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 기업이 전산 확인 정보보다 더 유리한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제출 가능

마. 신청 후 진행과정

-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사전조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정 가능
 - ①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업주, ②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 ③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여부 사전 조회
- (서류심사)

구분		기 준
대분류	소분류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훈련 기간	○ 훈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 산업형 과정 : L2 400시간, L3 600시간, L4~L6 800시간 - 기업형 과정 : 600시간
	훈련 비중	- 산업형 과정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 기업형 과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
	근로 시간	○ OJT를 포함한 학습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구분		기 준
대분류	소분류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훈련 실시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훈련실시 동의 여부 ※ 재학단계는 제외
	교육 연수	○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 훈련과정 개발완료 전 HRD담당자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기업 여건의 적절성 (보완 불가)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산재 다발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적격
	행정 처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
	신용등급	○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최하위에서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상시 근로자 수	○ 단독기업형 학습기업은 50명,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은 20명 미만 시 부적격 ※ 예외기준 충족시 5인 이상

- (현장심사) 공단과 일정 협의를 거쳐 CEO 인터뷰 및 훈련실시 예정 장소를 확인하는 현장심사 실시

구분	내용
시기	○ 신청기업과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대상	○ 서류심사 통과 기업
현장심사단	○ 기본요건 : 직종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한 외부전문가 2인 + 공단 직원 1인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전문가 인적사항은 현장심사 당일까지 비공개 사항 ※ 해당 심사 관련 이해관계자는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
심사내용	① 증빙 서류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특히, CEO의 일학습병행에 대한 이해도 및 인력개발 의지, 훈련 인프라 구축 상태 등 중점 확인 ② 심사지표에 따른 현장확인 및 배점 진행 - 70점 이상 득점시 '적합' 판정 - 우량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우량기업 판단 기준]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HRD-Net 조회기준 또는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 ※ 상기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판단 2. 최근 청년친화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Best HRD 선정기업 → 상기 우량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인정. 단, 학습기업 최소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3. 훈련직종이 요양보호(요양보호L2)인 기업은 상기 우량기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불인정(일학습병행 참여는 가능) [우량기업 심사 우대사항] ○ '유사훈련 실시경험', '장기근속 현황', '인적 인프라 현황', '안전·보건 관리 적정성(도제 제외)' 등 심사지표 만점 부여 <[별첨 3-2] 참조> ※ 시범사업의 경우, 별도 계획에 따름 ③ 심사결과는 현장심사 체크리스트 및 채점표(합의채점)에 작성
유의사항	○ 훈련장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경우만 심사 진행

- (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공단 지부·지사에서 그 결과를 기업에 송달 및 지정기업과 약정체결

3. 기업 지원내용

□ '19.9.2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외)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고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 기업당 4개 직무 지원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없이 자체 개발)		◦ 과정개발시 과정당 150만원 ◦ 학습도구 개발 과정당 60만원																												
훈 련 비	◦ 단가×시간×인원 ×(기준지원율 100%+가산지원율[-50~140%]) - 가산지원율 : ①훈련대상 + ②훈련종류 + ③훈련직종 + ④기업규모 + ⑤훈련장소(Off-JT)		◦ 단가: OJT 4,000원 Off-JT 6,500원 ◦ 대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기준 * 단, 재학생 단계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중 대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 ◦ ⑤ 훈련장소 : 공동훈련센터에서 Off-JT시 + 40%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①훈련대상</th><th colspan="2">②훈련종류</th><th colspan="2">③훈련직종</th><th colspan="2">④기업규모</th></tr></thead><tbody><tr><td>재학생</td><td>재직자</td><td>산업형</td><td>기업형</td><td>우대 직종*</td><td>일반 직종</td><td>중소 기업</td><td>대기업</td></tr><tr><td>+50%</td><td>-</td><td>+20%</td><td>-20%</td><td>+30%</td><td>-</td><td>-</td><td>-30%</td></tr></tbody></table>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 직종*	일반 직종	중소 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30%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 직종*	일반 직종	중소 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30%																							
※ 훈련직종 중 우대직종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NCS 중분류 27개 기준)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기간산업)</th><th colspan="2">·(전략산업)</th></tr></thead><tbody><tr><td colspan="2">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td><td colspan="2">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td></tr></tbody></table>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현장훈련 (OJT) 비용	◦ OJT단가(4,0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 월별 지급 (단, 2020.1.1.부터 능력단위별로 내부평가를 Pass했을 경우 계획 훈련시간에, Fail했을 경우 출석 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원. 평가 미실시 또는 요건 불충족 시 지원하지 않음) ◦ 연 최대 900시간 한도로 지원																												
사업장외 교육훈련 (Off-JT) 비용	◦ OffJT단가(6,5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⑤) * 공동훈련센터형(단독기업형 외 모든 유형)일 때 ⑤가산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 (월별) 1인당 20만원 ◦ (종료시) 일괄지급 :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월20만원×훈련기간]	◦ 지원안함	◦ 훈련실시 기간 동안 지원 ◦ 최대 36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일 시점에 학습기업에 재직중인 학습근로자만 산정																												
기업현장교사 수당	◦ 월별 최대 훈련 학습근로자 수 기준 <table border="1"><thead><tr><th>학습근로자수</th><th>1명</th><th>2명</th><th>3명</th><th>4명</th><th>5명</th><th>6명</th><th>7명</th><th>8명</th><th>9명</th><th>10명</th><th>11명</th><th>12명</th><th>13명 이상</th></tr></thead><tbody><tr><td>월별 지급액</td><td>33.3</td><td>41.6</td><td>50</td><td>58.3</td><td>66.7</td><td>75</td><td>83.3</td><td>91.6</td><td>100</td><td>108.3</td><td>116.6</td><td>125</td><td>133.3</td></tr></tbody></table> ※ 재직과 재학단계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 담당자 연수 지원(인원 한도 없음) ◦ 기업현장교사 심화교육 이수시 자격수당 추가 지급(월 10만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HRD담당자 수당	◦ 월 25만원 정액 지급																														
전담인력 양성	◦ 위탁기관(한기대)에 지원		◦ 100만원 내 외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 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월 330,000원 한도 ◦ 고교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 의 경우 미지원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상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3.1 이후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 적용기준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고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 기업당 4개 직무 지원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없이 자체 개발)		◦ 과정개발시 과정당 150만원 ◦ 학습도구 개발 과정당 60만원																										
훈 련 비	◦ 단가×시간×인원 ×(기준지원율 100%+가산지원율[100~140%]) - 가산지원율 :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 ④기업규모+ ⑤훈련장소(Off-JT)		◦ 단가: OJT 4,000원 Off-JT 6,500원 ◦ 대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기준 ◦ ⑤ 훈련장소 : 공동훈련센터에서 Off-JT시 + 40%																										
	<table><tr><th>①훈련대상</th><th>②훈련종류</th><th>③훈련직종</th><th>④기업규모</th></tr><tr><td>재학생</td><td>산업형</td><td>우대직종*</td><td>일반직종</td></tr><tr><td>+50%</td><td>+20%</td><td>+30%</td><td>-</td></tr></table>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산업형	우대직종*	일반직종	+50%	+20%	+30%	-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산업형		우대직종*	일반직종																								
	+50%	+20%		+30%	-																								
※ 훈련직종 중 우대직종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NCS 중분류 27개 기준)																													
<table><tr><th>▶(기간산업)</th><th>▶(전략산업)</th></tr><tr><td>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td><td>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td></tr></table>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현장훈련 (OJT) 비용	◦ OJT단가(4,0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 월별 지급. (단, 2020.1.1.부터 능력단위별로 내부평가를 Pass했을 경우 계획 훈련시간에, Fail했을 경우 출석 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원. 평가 미실시 또는 요건 불충족 시 지원하지 않음) ◦ 연 최대 900시간 한도로 지원																										
사업장과 교육훈련 (Off-JT) 비용	◦ OffJT단가(6,5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⑤) ◦ 산업계주도형 공동훈련센터에만 지급하며, 전체 Off-JT 훈련시간의 30% 및 연간 100시간 이내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 (월별) 1인당 정액지급		◦ 훈련 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한 달(OJT 또는 Off-JT)만 지원 - 단, ① 고용보험 가입 ② OJT 시 급여이체 이력 ③ 출석부 필수 제출 ◦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지급되는 성과금(학습기간×20만원)은 운영하지 않음																										
	<table><tr><th>연간평균 OJT 편성시간</th><th>지원금</th></tr><tr><td>200 미만</td><td>-</td></tr><tr><td>200~300미만</td><td>20만원</td></tr><tr><td>300 이상</td><td>30만원</td></tr></table>			연간평균 OJT 편성시간	지원금	200 미만	-	200~300미만	20만원	300 이상	30만원																		
연간평균 OJT 편성시간	지원금																												
200 미만	-																												
200~300미만	20만원																												
300 이상	30만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 월별 최대 훈련 학습근로자 수 기준		◦ 담당자 연수 지원(인원 한도 없음) ◦ 기업현장교사 심화교육 이수시 자격수당 추가 지급(월 10만원) ◦ '20.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																										
	<table><tr><th>학습근로자수</th><th>1명</th><th>2명</th><th>3명</th><th>4명</th><th>5명</th><th>6명</th><th>7명</th><th>8명</th><th>9명</th><th>10명</th><th>11명</th><th>12명</th><th>13명 이상</th></tr><tr><td>월별 지급액</td><td>33.3</td><td>41.6</td><td>50</td><td>58.3</td><td>66.7</td><td>75</td><td>83.3</td><td>91.6</td><td>100</td><td>108.3</td><td>116.6</td><td>125</td><td>133.3</td></tr></table> ※ 재직과 재학단계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HRD담당자 수당	◦ 월 25만원 정액 지급																												
전담인력 양성	◦ 위탁기관(한기대)에 지원		◦ 100만원 내 외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상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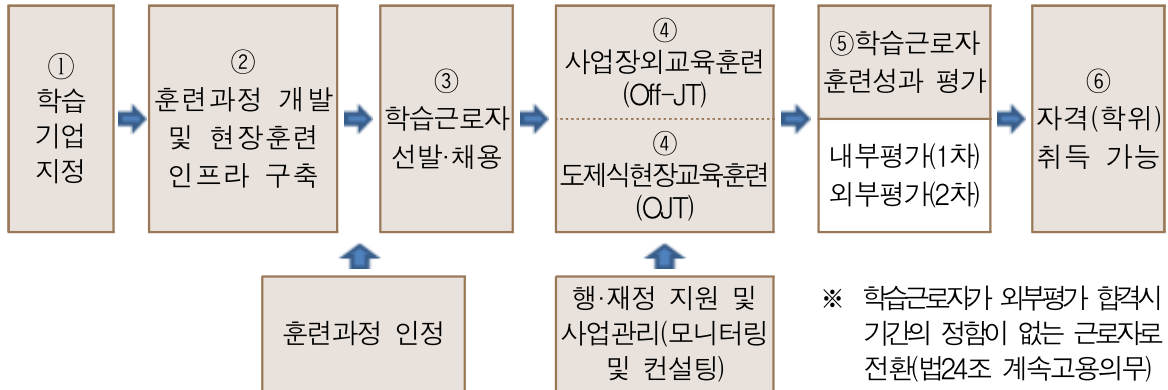
□ '20.9.29.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P-TECH)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고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 기업당 4개 직무 지원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없이 자체 개발)		◦ 과정개발시 과정당 150만원 ◦ 학습도구 개발 과정당 60만원																												
훈 련 비	◦ 단가×시간×인원 ×(기준지원율 100%+가산지원율[-20~140%]) - 가산지원율 : ①훈련대상 + ②훈련종류 + ③훈련직종 + ④기업규모 + ⑤훈련장소(Off-JT)		◦ 단가 : OJT 4,000원 Off-JT 6,500원 ◦ 대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기준 ◦ ⑤ 훈련장소 : 공동훈련센터에서 Off-JT시 + 40%																												
	<table><tr><th colspan="2">①훈련대상</th><th colspan="2">②훈련종류</th><th colspan="2">③훈련직종</th><th colspan="2">④기업규모</th></tr><tr><td>재학생</td><td>재직자</td><td>산업형</td><td>기업형</td><td>우대 직종*</td><td>기분 직종</td><td>중소 기업</td><td>대기업</td></tr><tr><td>+50%</td><td>-</td><td>+20%</td><td>-20%</td><td>+30%</td><td>-</td><td>-</td><td>-</td></tr></table>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 직종*	기분 직종	중소 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 직종*	기분 직종	중소 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																							
※ 훈련직종 중 우대직종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NCS 중분류 27개 기준)																															
<table><tr><th colspan="2">▶(기간산업)</th><th colspan="2">▶(전략산업)</th></tr><tr><td colspan="2">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td><td colspan="2">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td></tr></table>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현장훈련 (OJT) 비용	◦ OJT단가(4,0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 월별 지급. (단, 2020.1.1.부터 능력단위별로 내부평가를 Pass했을 경우 계획 훈련시간에, Fail했을 경우 출석 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원. 평가 미실시 또는 요건 불충족 시 지원하지 않음) ◦ 연 최대 900시간 한도로 지원																												
사업장과 교육훈련 (Off-JT) 비용	◦ OffJT단가(6,5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⑤) * 공동훈련센터형(단독기업형 외 모든 유형)일 때 ⑤가산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 (월별) 1인당 30만원		◦ 훈련실시 기간 동안 지원																												
	◦ (종료시) 일괄지급 :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월20만원×훈련기간]		◦ 최대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지원 ◦ 신청일 시점에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학습근로자만 산정																												
기업현장교사 수당	◦ 월별 최대 훈련 학습근로자 수 기준 <table><tr><th>학습근로자수</th><th>1명</th><th>2명</th><th>3명</th><th>4명</th><th>5명</th><th>6명</th><th>7명</th><th>8명</th><th>9명</th><th>10명</th><th>11명</th><th>12명</th><th>13명 이상</th></tr><tr><td>월별 지급액</td><td>33.3</td><td>41.6</td><td>50</td><td>58.3</td><td>66.7</td><td>75</td><td>83.3</td><td>91.6</td><td>100</td><td>108.3</td><td>116.6</td><td>125</td><td>133.3</td></tr></table> ※ 재직과 재학단계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 담당자 연수 지원(인원 한도 없음) ◦ 기업현장교사 심화교육 이수시 자격수당 추가 지급(월 10만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HRD담당자 수당	◦ 월 25만원 정액 지급																														
전담인력 양성	◦ 위탁기관(한기대)에 지원		◦ 100만원 내 외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월 330,000원 한도 ◦ 고교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상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① 기업지정·약정체결 :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학습 기업과 공단 관할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 사업 약정 체결

② 훈련준비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해당 교육 담당

-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학습근로계약은 훈련과정의 참여자가 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
|-------------------|--|
|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 2) 일학습병행의 기간 |
| 3) 일일 학습근로시간 | 4)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등) |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 사항

- ✓ 일학습병행법 제22조(학습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 ✓ 또한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내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을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 사항

-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가능
- ✓ 학습근로자는 훈련직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
- ✓ 동일인이 기수료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③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사업장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 설계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워크숍 형태로 직접 개발) 등에서 개발·제작 지원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 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단에서 심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⑤ 훈련 실시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매월 HRD-Net으로 비용신청 시 공단에서 검토 후 지원

⑥ 훈련 성과 평가 : 기업 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⑦ 자격 취득 가능 : 외부평가(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가능

⑧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단,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제24조) 및 위반시 불이익(제42조)

- 사업주는 '20.8.28.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 법 시행일 이전부터 실시되는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및 자격발급 관련 수수료 발생(제37조)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③ 기업현장교사 결격사유(제19조)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별첨4 참조)는 청소년 대상 훈련에 참여 불가

☐ 학습기업 지정취소 요건 [법 제14조, 시행규칙 별표1]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주요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 부정지정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요건 미달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불·산재다발 공표기업, 인정제한 기업		지정 취소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시정 명령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지정 취소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용등급 최하에서 두 번째등급 이상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업현장교사, 실무담당자 각 1인 이상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 장비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 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년 이내 임금체불 2회 이상 유죄/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추가 훈련 제한 요건 [규정 제5조]

-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학습근로자 중도탈락률 50% 이상 등)에 따라 추가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 훈련성과 미흡기관 지정 기준 및 시점 등은 공단이 별도로 안내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2조, 영 제19조, 시행령 별표]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 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1,000	2,000	3,000
다. 법 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아래 참고)	법 제42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라.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현장 조사 등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300	400	500

[별첨 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연락처

기관명	관할지역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Fax: 02-2137-0478	02-2137-0471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03302)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Fax: 02-461-8301	02-2024-176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Fax: 02-6499-7115	02-6907-7116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15층 *Fax: 02-6499-7115	02-2161-9144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Fax: 033-248-8540	033-248-8524
원주일학습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26354)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1007호	033-810-2570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Fax: 033-650-5729	033-650-5746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46519)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Fax: 051-333-3751	051-330-1913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48518)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 *Fax: 051-621-7385	051-620-1932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Fax: 055-212-7219	055-212-7233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초전동 260) 농산물도매시장 內 (구)진주시농업인회관	055-791-072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7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Fax: 052-276-9034	052-220-3252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42704)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비즈니스센터 201호 *Fax: 053-580-2349	053-580-2337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군위군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Fax: 054-855-2001	054-840-3024

기관명	관할지역	주 소	연 락 처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경주시, 울진군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Fax: 054-230-3250	054-230-3232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39371)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Fax: 0505-174-2141	054-713-3014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Fax: 031-249-1249	031-249-128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Fax: 032-820-8680	032-820-864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강원도 철원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5층 *Fax: 031-853-9387	031-850-914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5층 *Fax: 031-750-6210	031-750-620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1755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더스페이스 I, 2~3층) *Fax: 0505-174-2280	031-615-9024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032-719-082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Fax: 062-944-1788	062-970-1784
전북지사	전라북도의 전지역 (군산시 · 고창군 · 부안군 제외)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Fax: 063-210-9251	063-210-9232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의 군산시 · 고창군 · 부안군	(54026)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 *Fax: 063-452-2090	063-210-9294
전남지사	전라남도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Fax: 061-725-5097	061-720-8541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Fax: 061-288-3310	061-288-3314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지로 19 *Fax: 0505-174-2190	064-729-0729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Fax: 042-586-8827	042-580-9124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Fax: 043-278-3086	043-279-9032

기관명	관할지역	주 소	연 락 처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길 27 *Fax: 041-620-7630	041-620-7607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 5층	044-410-0814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단양군, 제천시	(27502)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 충주농협 3~4층	

[별첨 2]

일학습병행 통합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정왕동) 대학본부 2층 산학협력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496-4673
2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3-850-6743
3	대림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대학본부 3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467-4574
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평생직업교육관 1210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5-370-8351
5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창조관 408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1-860-3080
6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로 1길 34(필운동, 배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397-0683
7	서일대학교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 서일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490-7454
8	안산대학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363-7767
9	우송정보대학교	대전시 동구 백룡로 59(자양동) 국제경영센터(E2) 1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2-629-6941
10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IC-206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2-279-3222
11	인천재능대학교	인천시 동구 재능로 178 인천재능대학교 본관 3층 302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890-7108
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과학관 101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3-210-8341
13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85 대학본부 3층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62-519-7220
14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84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HRD센터 산학협력처	054-468-5228
15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3번길 23 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032-450-0370
16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43길 15(평리5동 1495) 산학협력단 403호	053-560-3272
17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대전 동구 우암로 352-21 산학협력단	042-670-0503
18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 2-69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51-609-6058
19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육합캠퍼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혜음관 1층 산학협력처	031-650-7339
20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99 도서관(2) 1층 산학협력	051-330-7720
21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10길 112 제 2교육관 산학협력처	02-2186-5830
22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보광동, 238) 제3공학관 1층 산학협력단 교육1팀	02-2001-4842
23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본관 2층 산학처 일학습팀	031-739-4023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24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41 대학본부 산학처	061-720-1520
25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45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41-539-9440
26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2 산학협력관 2층 일학습 병행센터	053-980-1114
27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2425번길 73 대학본부 1층 산학 협력처	033-741-7150
28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북 익산시 선화로 579 산학협력관 1층	063-830-3034
29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한국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1층 일학습추진팀	032-510-2153
30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상마리 14-1) 산학협력처	061-450-7240
31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경남 진주시 모덕로 299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55-760-2239
32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산학협력단 2층 사무실	055-260-1109
33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송정동 47번지) 대학 본부 산학협력처	043-279-7414
34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우두상리길 68 1공학관 산학협력단	033-250-9718
35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경남 사천시 대학길 46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55-830-3431
36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산학협력처 건물	031-350-3241
37	한양여자대학교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행원 파크 B161호	02-2290-2775
3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18 실학관 7층 704호	041-560-1251
39	한국공학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미래인재관 707호	031-8041-1466
40	부천대학교	경기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 밀레니엄관 7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580-7952
41	순천향대학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인문 대학 6428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1-530-1497
42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 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835-9970
43	동양미래대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45 대학본부 4층 산학 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2610-1815
44	동서울대학교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6호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724-2393
45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관 2층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950-7226
46	홍익대학교(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C406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4-860-2152
47	영진전문대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프론티어관 210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4-970-9490
48	전주비전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63-220-3904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49	경북전문대학교	경북 영주시 대학로 77 본관3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4-630-5180
50	강원대학교(삼척)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강의동 121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3-570-6875
51	강동대학교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 강동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3-879-3350
52	두원공과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관음당길51 두원공과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3056-7182
53	경상대학교(부산)	부산 연제구 고분로 170 부산경상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1-850-1331
54	신성대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1 신성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1-350-1537

일학습병행 (재직)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ICT폴리텍대학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6-26 대학본부 1층 일학습공동훈련센터	031-760-3377
2	공주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산학협력관	041-521-9001
3	광주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백인관 6층 행정실	062-670-2076
4	구미대학교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팀	054-440-1455
5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16(동패동 66번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031-940-6805
6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37(소촌동 235번지) 기업교육팀	062-940-3005
7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인력개발센터 3층 교육기획처 일학습팀	051-610-3104
8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05번길 32(고잔동, 남동공단 56블럭) 본관동 교육기획처	032-810-6503
9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소룡동) 119번지 전북인력개발원	063-472-2505
10	창원문성대학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훈로 91 7호관 206호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055-279-5242
11	캠텍종합기술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2층 인재개발팀	063-219-0330
12	중부대학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101번지 중부대학교 세종관 423호	031-8075-1656
13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노암동 779)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33-610-6104
14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논공읍 논공로 226 산학관 산학협력처 2층	053-610-6641
15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155(동동 81번지) 함월관 1층 산학협력처	052-290-1505
16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6길 14 와이즈플레이스 2층	02-6191-0092
17	한국소프트웨어 기술진흥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801호	031-606-9321
18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A9 50주년기념관 2층 행정실	051-410-5241
19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금호관 2층 산학협력단	064-741-6560
20	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20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054-220-8081
21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112번길 48 본관 2층 산학협력단	041-746-7331
22	한밭대학교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s5동 602호 산학연합동관	042-821-1249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23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산학협력관 2층	054-288-2279
24	현진소재 미래교육원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91 1층	051-602-7880
25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경북 영주시 가흥로 2 일학습공동훈련센터	054-639-4287
26	한국상용SW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309호	02-6215-2600
27	부산과학기술 대학교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 본관 산학협력단	051-330-7381
28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88-6923
29	한국금융투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교육부	02-2003-9810
30	(사)충북산학 융합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벤처 연구센터	043-220-1031
31	서라벌대학교	경북 경주시 태종로 516 서라벌대학교 본관 듀얼공동 훈련센터	054-770-3672
32	거제대학교	경남 거제시 마전1길 91 본관 산학협력단	055-680-154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강경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강경상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1-980-8751
2	강릉중앙고등학교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422 강릉중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3-610-6810
3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289-1725
4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04 경기스마트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8708-2188
5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03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10-9020
6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90-4690
7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5번길 22 경남공업고등학교 중관 2층 도제교육부	051-607-7496
8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378 경남자동차고등학교 1층 도제학교부	055-758-6865
9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0 경북공업고등학교 전자과	053-235-8565
10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1053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429-0571
11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21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859-3845
12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54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474-2592
13	경북하이텍고등학교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4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612-8025
14	경상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길 151 경상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8919
15	경성전자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울로 25 경성전자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231-5201
16	경주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09 경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778-7850
17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주시 시동로 90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8693-3142
18	경주정보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7길 19 경주정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742-8962
19	계룡디지털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소량길 64 계룡디지털고등학교 제2교무실 도제교육부	042-630-6052
20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13번안길 9-9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081-4537
21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컴퓨터전기과	02-918-7761(113)
22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 광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2-570-2920
23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단중앙로 7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아동 2층 도제교육부	062-970-0592
24	구립공업고등학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53 구립공업고등학교 기계과실(도제부)	061-471-6313
25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487번길 54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489-8090
26	금정전자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75 금정전자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540-0180
27	금파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80 금파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2-605-6269
28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길 8-18 금호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333-3612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29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69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999-3791
30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9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도제센터	055-340-7460
31	논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65 논산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70-7813-8142
32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97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도제부	070-7602-3830
33	당진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5 당진정보고등학교 도제부	041-351-9030
34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 135 대구공업고등학교 금형도제관	053-231-8179
35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228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1-9085
36	대구관광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71길 37 대구관광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9713
37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50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1-8641
38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13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1-8562
39	대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지계골로 128-27 대양고등학교 2층 도제교육부	051-640-0611
40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산초교로63번길 12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도제지원센터	042-629-1369
41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39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도제부	042-611-8360
42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303-12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본관 4층 도제교육부	053-235-9163
43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2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580-5123
44	대한미용사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3 대한미용사회(사)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02-3474-7221
45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21길 5-12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613-0515
46	인천소방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인천소방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760-0270
47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10 동명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610-2580
48	동아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0번길 79 동아공업고등학교 근면관 1층 특성화교육부	051-200-3832
49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0 동의공업고등학교 실습동 2층 도제부	051-811-7567
50	서울매그넷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10길 45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도제부	070-4919-6141
51	두원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727 두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678-0213
52	마산공업고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마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5-293-5831
53	목포공업고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0 목포공업고등학교 삼호동 2층 도제부교사실	061-800-7144
54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96번길 80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동 2층 도제교육부	051-607-3955
55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52 부산관광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944-9521
56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56 부산디지털고등학교 2층 도제부	051-460-0226
57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59번길 51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공동훈련센터	051-606-0330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58	부여전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1027 부여전자고등학교 교무실	070-4268-6049
59	부원고등학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57 부원고등학교 해금관 2층 도제교육부	031-645-6257
60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73번길 36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5층 도제교육부	051-293-5733
61	부천공업고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20번길 82 부천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610-7501
62	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94 부평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627-0142
63	삼일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0 삼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250-4761
64	삼일상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28 삼일상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8065-8941
65	상서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07 상서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9666
66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219길 61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산학협력부	02-428-0732(320)
67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68번길 115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309-3151
68	서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72-12 서산공업고등학교 실습동 4층	041-689-6851
69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025-6725
70	서울디지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2길 27 서울디지털고등학교 소프트웨어부	02-798-3641(211)
71	서울신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 서울신정고등학교 제2교무실 관광도제부	02-2644-3543(190)
72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299 서울아이티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7606-4840
73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64 서울컨벤션고등학교 도제부	070-4008-7861
74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7길 49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베이커리학과.도제 교무실	02-763-6245
75	성동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90 성동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8685-7755
76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65 성수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사무실	02-499-9243
77	성일정보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77번길 10 성일정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720-1342
78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가길 33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354-5814
79	수원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수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07-9450
80	순천효산고등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04 순천효산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750-9559
81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6길 16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385-3451(227)
83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33번길 42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행정실	041-422-4263
83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35 양영디지털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778-2332
84	영광공업고등학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34 영광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872-0075
85	영남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영남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8775
86	전남에너지고등학교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 16-13 전남에너지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473-7184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87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전자관 3층 도제교육부	041-404-0054
88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용산철도고등학교 도제교육부 3층	02-6905-7754
89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49 울산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70-8889-0842
90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57-57 은평메디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020-6818
91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57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031-820-9749
92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902-2558
93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60-0160
94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627-3776
95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03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20-6559
96	인천세무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2 인천세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5004-3648
97	인천재능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인천재능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90-7655
98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92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770-0753
99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111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517-0721(400)
100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72 장성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399-5634
101	장항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77 장항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41-955-5654
102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실고길 44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도제부	061-370-7556
103	전남미용고등학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182-9 전남미용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338-8970
104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1-1 전북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889-1650
105	전주공업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01 전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도제교육부	063-210-9515
106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84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IT전자과 사무실	043-647-4395
107	제천산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10길 160 제천산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646-4196
108	조일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 136-11 조일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9073
109	증평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80 증평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835-0039
110	진도실업고등학교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10 진도실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544-1932
111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43번길 25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훈련센터	055-790-1591
112	창원공업고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410 창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부	070-4788-4846
113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19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7860-8403
114	천안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천안공업고등학교 기계과	041-590-9480
115	천안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43-9 천안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부 도제담당	041-413-6562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16	청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청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229-5485
117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59 청주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299-1752
118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2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99-1661
119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53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3-258-8632
120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205번길 52 충북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230-5207
121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형설로 120 충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841-1459
122	평촌경영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86 평촌경영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5106-1745
123	평촌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16번길 13 평촌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90-4840
124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41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612-8053
125	포항홍해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동해대로1475번길 42 포항홍해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614-0882
126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49-6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기술교육원 본관 3층	02-783-1711
12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88-6977
128	한봄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한봄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7860-7467
129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도제교육부	070-4832-3853
130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96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공동훈련센터	051-792-7821
131	홍성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홍성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41-642-0962
132	휘경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겸재로 21 휘경공업고등학교 4층 도제교육부	02-2230-9951
133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16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도제부	031-218-4121
134	경기상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6 경기상업고등학교 도제부	02-6362-1250
135	성남금융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53(야탑동) 성남금융고등학교 도제부	031-706-0292
136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6 광양하이텍고등학교 도제부	061-760-3085
137	대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35 대광고등학교 도제부	051-207-1879
138	부산정보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24 부산정보고등학교 도제부	070-4672-2060
139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34-13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부	062-606-5856
140	이리공업고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36길 35 이리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63-722-3034
141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경상북도 영주시 영봉로 28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도제부	054-716-2672
142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도제부	063-240-1771
143	원주공업고등학교	강원 원주시 고문골길 54 도제교육부	070-7606-5943

P-TECH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영남이공대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본관 6층 P-TECH 공동훈련센터	053-650-9579
2	유한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90 (괴안동, 유한대학) 평화관 3층 1303호 P-TECH공동훈련센터	02-2610-0657
3	경남정보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 민석기념관 3층 P-TECH 공동훈련센터	051-320-1328
4	신안산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도서관 3층 P-TECH 공동훈련센터	031-490-9005
5	군장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12번 건물 P-TECH 공동훈련센터	063-450-8327
6	동강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동강대학교) 10번건물 산학협력관 P-TECH 공동훈련센터	062-520-2486
7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4층 산학협력단 P-TECH 공동훈련센터	031-249-6352
8	삼육보건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S관 204호 산학협력단 P-TECH 공동훈련센터	02-3407-8566
9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본관 310호 산학협력단 P-TECH 공동훈련센터	032-870-2741
10	혜전대학교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25 P-TECH 공동훈련센터	041-630-5226
11	수성대학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P-TECH 공동훈련센터	053-749-7012
12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북 김제시 백학제길 154 P-TECH 공동훈련센터	063-540-7615
13	연성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산학협력단	031-441-1056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가천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대학 5-3호	031-750-6987
2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 9호관 3층	053-819-7717
3	동의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226호	051-890-4484
4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교수회관 B17 3층 303호	061-450-6480
5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IPP듀얼공동훈련센터	032-860-9297
6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IPP사업단	043-849-1713
7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관 402호 IPP사업단	02-760-8019
8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원흥관 F317	02-450-0572
9	광운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복지관 206호 KW-IPP 공동훈련센터	02-940-8212
10	건국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창의관 318호 IPP센터	02-450-0564
11	동신대학교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 동신대학교 정보전산센터 109호	061-330-6471
12	배재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IPP사업단	051-509-5311
13	한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계의돈기념관(이과대학) 1층 18호 한남대학교 IPP일학습사업단	042-722-2331
14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F101 IPP사업단	051-999-6342
15	인제대학교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늘빛관 217호	055-320-3624
16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괘법동) 신라대학교 화당관 1층	042-629-7185
17	경남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창조관 209호 KU-IPP사업단	055-249-2094
18	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30호관) 508-1호 IPP사업단 행정실	051-663-5614
19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IPP사업단	041-580-3528
20	명지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체육문화관 6202호	031-324-1228
21	서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서원대학교 인문사회관 704호	043-299-8216
22	영산대학교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주남동) 영산대학교 문화관 3316호	055-380-9602
23	협성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이공관 105호 IPP 센터	031-299-0995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24	가톨릭관동대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브리엘관 108호 가톨릭관동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단	033-649-7352
25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IPP사업단	02-940-4871
26	동서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스튜던트플라자 3층 IPP사업단	051-320-4869
27	목원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88(도안동)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06호	042-829-8137
28	선문대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선문대학교 IPP사업단	041-530-8556
29	한라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	033-760-1904
30	한신대학교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한신대학교 IPP사업단	031-379-0878

전문대 재학생단계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전남도립대학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61-380-8576
2	동원대학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760-0185
3	유한대학교	경기 부천시 경인로 590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299-3508
4	장안대학교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2610-0651
5	서정대학교	경기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860-5266
6	경인여자대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540-004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no	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8층	02-6050-3151
2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0	033-256-9547
3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5층	032-810-2849
4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번길 10, 중앙빌딩 신관 2층	031-8014-5497
5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공회의소 6층	042-719-3055
6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지부 3층	070-4469-3311
7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화로 10-22	041-330-4923
8	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 3404호	044-414-9263
9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2층	053-222-3158
10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로 135	054-463-3362
11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051-990-7057
12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1층	052-228-3172
13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2층	055-261-8308
14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빌딩 4층 403호	062-350-5819
15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7층	063-280-1187
16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6층	061-273-0991
17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1층	064-757-2164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

no	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6,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88-6988
2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7	053-248-8116
3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 대운빌딩 1층	054-278-5143
4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5층	042-368-9721
5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2호	031-8064-1085
6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031-8064-1085

[별첨 3-1]

◆ 학습기업 지정 평가지표(참여유형 공통)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45)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45)	일학습 병행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의지 (40)	□ 배점기준 / 확인방법 / 사후관리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 · 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 <tr> <td>10점</td><td>7점</td><td>3점</td><td>0점</td></tr> </table>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사내우수인력 투입 가능성, 전담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등 전담자 선발·관리에 대한 계획을 확인 - (사후관리)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훈련과정 인정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 <tr> <td>10점</td><td>7점</td><td>3점</td><td>0점</td></tr> </table>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학습근로자 임금수준 등 대우 및 훈련으로 인해 늘어날 학습근로자의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 완료한 학습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전반적인 관리·활용 방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여부 등 확인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 · 방안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 <tr> <td>10점</td><td>7점</td><td>3점</td><td>0점</td></tr> </table>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구체적 HRD계획이 있는지, 일학습병행을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 활용할 것인지,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 <tr> <td>10점</td><td>7점</td><td>3점</td><td>0점</td></tr> </table>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평가 등 일학습병행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 훈련과정 개발시 기업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유사 훈련 실시 경험 (5)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3회 이상</td><td>2회</td><td>1회</td><td>0회</td></tr> <tr> <td>5점</td><td>3점</td><td>1점</td><td>0점</td></tr> </table> □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타 정부 부처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 소속직원 대상 양성 교육일 때 인정 - 사업주훈련 등은 공단 DB를 통해 확인, 나머지 사업은 현장 심사시 기업에서 제시하여 확인 - 유사훈련 예시: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채용예정자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NCS 기업 개발컨설팅, 일학습병행 타 유형 등 (각 사업별 중복실시는 1회만 인정) - 단순 임금지원성 사업 또는 기업 자체 훈련 불인정	3회 이상	2회	1회	0회	5점	3점	1점	0점								
3회 이상	2회	1회	0회																
5점	3점	1점	0점																
기업 여건의 적절성 (30)	기업규모 및 건전성 (30)	신용 등급 (5)	□ 배점기준 ① 신용등급이 A~D등급으로 표시된 경우 <table border="1"> <tr> <td>A등급군</td><td>B등급군</td><td>C등급군</td><td>D등급군</td></tr> <tr> <td>5점</td><td>4점</td><td>3점</td><td>지정제외</td></tr> </table> ② 신용등급이 ABCD 등급체계가 아닌 경우 <table border="1"> <tr> <td>최상위 등급</td><td>최상위 두 번째 등급부터 최하위 세 번째 등급까지</td><td>최하위 두 번째 등급</td><td>최하위 등급</td></tr> <tr> <td>5점</td><td>4점</td><td>3점</td><td>지정제외</td></tr> </table> ※ 보고서상 신용등급이 ABC 등급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예 : 1등급, 2등급/ eA, eB 등), 해당 신용등급체계에서 적용하는 등급 구간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배점 ③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신용평가 요청내역이 없거나 금융거래 내역 없는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신생기업 등)는 0점 □ 확인방법 - 전산*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회 (공단에서 별도 사이트 활용) - 전산에 유효한 신용등급 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더 유리한 정보가 있는 경우 기업 제출 정보로 배점 가능 - 신용등급은 신청 시점을 기준 가장 최근 등급적용 - 인정 가능한 증명서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보고서(평가등급, 조사등급, 모형등급) - 기술신용평가보고서(기업 신용등급 항목)	A등급군	B등급군	C등급군	D등급군	5점	4점	3점	지정제외	최상위 등급	최상위 두 번째 등급부터 최하위 세 번째 등급까지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최하위 등급	5점	4점	3점	지정제외
A등급군	B등급군	C등급군	D등급군																
5점	4점	3점	지정제외																
최상위 등급	최상위 두 번째 등급부터 최하위 세 번째 등급까지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최하위 등급																
5점	4점	3점	지정제외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 여신평가보고서 등 은행에서 발급한 각종 증빙 서류(대외공개용 자료만 인정) - 신용등급 예외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경우 최상위등급(5점) 부여 - 사업장 유형이 모기업 산하에 있는 지점 형태일 경우에는 본사 신용등급 적용 가능 ※ 단, 본사와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에는 본사 신용등급 적용 불가																				
		상시 근로자 수 (15)	□ 배점기준 <table><tr><td>100이상</td><td>50이상 -100미만</td><td>20이상 -50미만</td><td>20미만</td></tr><tr><td>15</td><td>12</td><td>9</td><td>6</td></tr></table> □ 확인방법 · HRD-Net 상시근로자 수 확인 또는 (기업제시 숫자와 HRD-Net상 상시근로자 수가 맞지 않을시) 티 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 확인(3개월 유지 인원) ·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이상 ※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도제 포함)	100이상	50이상 -100미만	20이상 -50미만	20미만	15	12	9	6												
100이상	50이상 -100미만	20이상 -50미만	20미만																				
15	12	9	6																				
	장기근속 현황(10)	장기 근속 현황 (10)	□ 배점기준(설립 5년 이상 기업의 경우) <table><tr><td>70%이상</td><td>50%이상 70%미만</td><td>40%이상 50%미만</td><td>30%이상 40%미만</td><td>30%미만</td></tr><tr><td>10</td><td>7</td><td>5</td><td>3</td><td>0</td></tr></table> - (고용보험취득일로부터 참여신청일까지 3년 이상 근무자 수/전체 피보험자 수)*100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설립 5년 미만 기업의 경우) <table><tr><td>70%이상</td><td>50%이상 70%미만</td><td>40%이상 50%미만</td><td>30%이상 40%미만</td><td>30%미만</td></tr><tr><td>10</td><td>7</td><td>5</td><td>3</td><td>0</td></tr></table> - (고용보험취득일로부터 참여신청일까지 기업 운영기간의 50% 이상 근무자 수/전체 피보험자 수)*100에 따라 배점 □ 확인방법 · 티 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의 참여신청일 기준 고용 보험피보험자 수 확인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훈련 준비 상황 (25)	인적인프라 현황(10)	기업 현장 교사 후보군 보유 (10)	□ 배점기준 <table><tr><td>6명 이상</td><td>5명</td><td>4명</td><td>3명</td><td>2명 이하</td></tr><tr><td>10</td><td>7</td><td>5</td><td>3</td><td>0</td></tr></table> - 아래 요건에 부합한 경우의 해당인원 수에 따라 배점 ① 「고등교육법」에 제 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④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확인방법 • 현장심사시 기업현장교사 자격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① 졸업증명서 등, ①②④⑤⑥ 경력증명서, ③④⑤ 해당 자격증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10	7	5	3	0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10	7	5	3	0								
물적인프라 현황 (10)	훈련 시설 장비 (10)	□ 배점기준 <table><tr><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10점</td><td>7점</td><td>3점</td><td>0점</td></tr></table> □ 확인방법 • 현장심사시 확인 • 기업체 보유훈련장비 현황, 장비의 위치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비계량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안전· 보건관리 적정성(5)	안전· 보건 관리 적정성 (5)	□ 배점기준 <table><tr><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5점</td><td>3점</td><td>1점</td><td>0점</td></tr></table> □ 확인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사업장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배점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따름 • (매우우수)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인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실시 등 전반적인 위험관리 매우 우수, 최근 6개월 이내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등 • (우수)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인 평가실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등 개선조치 미흡, 최근 1년 이내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등 • (보통)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평가실시를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 (미흡)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평가 미실시 ※ 안전보건공단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기업」은 [매우우수]로 배점 ※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안전보건공단 위탁 교육 포함)만 인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0점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훈련과정 (가점 3)			□ 확인방법 4차 산업혁명(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운영여부 확인 * IT시스템운영_L5, IT프로젝트관리_L6, 로봇기구 개발_L5, 로봇소프트웨어 개발_L5,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_L5, 스마트팩토리시스템관리_L6, 임베디드SW개발_L5, 임베디드 SW개발_L6, SW0키텍트_L6, SW테스트_L5, SW개발_L3, SW개발_L5,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개발_L3,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개발_L5, 스마트 팜개발_L3, L5, 3D프린터운용_L2, 가상훈련콘텐츠SW개발_L5, 빅데이터분석_L5, 빅데이터 구축,운영_L5, 인공지능개발_L5, 스마트물류 운영,관리_L4, 블록체인서비스개발_L5 - 그 밖에 심사위원이 현장심사 시 기업의 생산품 및 훈련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4차 산업혁명 훈련과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외 신기술 교과편성이 의무화된 P-TECH, 도제 4차 산업 시범기관 등도 해당 가점 부여 □ 사후관리 4차 산업분야 가점부여시 해당 과정기준으로 심사(물적 인프라 현황 등) 4차 산업분야로 신청하였다가, 일반과정으로 훈련과정 개발할 경우 '훈련과정 개발' 착수 불가
정부부처 인증 등*에 해당하는 기업 (가점 4) * 지표 세부내용 참조			□ 확인방법 ①사회적경제기업, ②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선도기업, ③산업통상자원부 외투기업 부문 포상기업, ④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소재 기업, ⑤교육부 산학협력우수인증 기업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1년 이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감점 20)			□ 확인방법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취소 처분이력이 있는 기업(공단에서 HRD-Net을 통해 확인)
최근 1년 이내 학습기업의 지위를 자진반납한 기업 (감점 15)			□ 확인방법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진반납한 이력이 있는 기업(공단에서 HRD-Net을 통해 확인)

[별첨 3-2]

□ 우량기업 지정지표 우대사항

지정지표 항목		배점	심사항목		비고
			일반기업	우량기업	
Ⅰ. 인력양성 에 대한 의지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기업전담인력 선발·관리	10	○	○	① CEO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학습근로자 선발·관리	10	○	○	
	중장기 HRD 계획·방안	10	○	○	
	훈련과정 개발·운영역량	10	○	○	
	- 유사 훈련 실시경험	5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Ⅱ. 기업여건 의 적절성	1. 기업규모 및 건전성				
	신용등급	5	○	○	1차 서류심사시 공단 담당자가 확인
	상시근로자 수	15	○	○	
	2. 장기근속 현황	10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Ⅲ. 훈련준비 상황	1. 인적 인프라 현황	10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2. 물적 인프라 현황	10	○	○	② 물적 인프라 확인 정성평가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5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도제 제외)

[별첨 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대상 훈련에 참여 불가

※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항	요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대상 훈련에 참여 불가

※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항	요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서식1

일학습병행 지정신청서(전산 제출로 대체)_참고용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유형	재직자	[] 단독기업형 [] 공동훈련센터형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재학생	[] 도제학교 [] 고교·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교(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 여부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된 업종 :		그 밖의 업종 :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 :		훈련기간		
희망 훈련분야			훈련유형	[] 산업형 ([] 대학연계형) [] 기업형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 소					
훈련실시 장소			훈련인원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상시 근로자수		기업신용등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 성명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중

서식1
일학습병행 지정신청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뒤쪽)

첨부 서류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 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	--

작성 시 유의사항

- 희망 훈련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 24개 대분류 중 해당분야를 작성합니다.
- 훈련유형 중 대학연계형은 산업형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훈련실시장소와 주소가 같은 경우 훈련실시장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 학습근로자 근로조건은 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독기업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 “공동훈련센터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란 기능대학·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 “도제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 교육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 “고교·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인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어 고등학교 2학년 부터 전문대학 2학년 1학기까지 3년 6개월 간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고교·전문대 통합 운영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 “전문대학”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사체계를 기반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병행을 통해 능력중심 기반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말합니다.
- “4년제 대학교(IPP)”란 4년제 대학교가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교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실습생) 사업과 일학습병행(학습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 “산업형 과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 병행과정을 말합니다.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회사 소개

- 연혁 및 일반현황 :
- 주요 생산품 및 제품 :
- 업종 :
- 조직도(종합) * 조직도나 조직 현황을 간략히 기재하고, 교육훈련 전담부서 표시

I.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 훈련과정의 적절성

가. 훈련과정

☐ 산업형 / ☐ 기업형 (☐ 대학연계형 선택 여부)

- * 대학연계형의 경우 산업형만 인정하며, 재직자 공동훈련센터가 대학일 경우에만 가능
- * 산업형: 해당자격 필수능력단위 전체 활용(재학생은 반드시 산업형으로 신청)
- * 기업형: 전체 훈련시간 중 NCS 50%이상 활용
- * 산업형 신청 후 기업형 과정으로 전환 불가

나. 훈련직무 분야(훈련대상자 채용직무 분야) 기재(자격명 또는 NCS 세분류)

-
- * (예시) (산업형) 프레스금형제작사_L3, (기업형) 특수용접
 -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다. 훈련실시 기간

() 개월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 산업형과정: L2 400시간, L3 600시간, L4~6 800시간
- 기업형과정: 600시간

※ 재직자: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학위취득과정은 48개월 가능) / 도제학교: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 / 유니테크: 최소 3.5년 ~ 최대 4년 / IPP: 최소 12개월 / 전문대 재학생: 12개월

*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학습근로자 학력수준(학습근로자 요구수준)과 일학습병행 이수 후 학습근로자 목표 수준(훈련수준)에 따라 최소훈련기간 결정

* 기업지정 후 훈련과정 개발 과정에서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확대·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의함.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라.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과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구성 비율

<사업장외훈련 시간(%) : 현장훈련 시간(%)>

* 산업형과정 :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 기업형과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

* 사업장외교육훈련은 이론교육 및 이론 관련 실험실습 등 포함

마. 모집 · 채용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

☐ 재학생(☐고교/☐전문대/☐대학) (학년)

☐ 졸업생(☐고교/☐전문대/☐대학) ☐ 기타()

바. 모집 · 채용 학습근로자의 전공 요구 수준

☐ 관련분야 전공자 ☐ 비전공자 ☐ 무관

2.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

가. 총 명(기채용자 명, 신규채용 예정 명)

II.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1. 일학습병행 이해도 및 참여 의지

가. 일학습병행 수행계획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 · 방안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나. 그동안 정부지원 유사 교육훈련 사업* 참여 여부

- ☐사업주훈련 ☐채용예정자 훈련 ☐학습조직화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 ☐컨소시엄 훈련 ☐NCS기업개발컨설팅 ☐일학습병행 타 유형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기간:) ☐기타 ()

* 단순 임금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안됨

다. **훈련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1단계(온라인) 수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그 외,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가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공단이 정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훈련실시 신고 시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이수 요건

구분	교육과정	교육방법	훈련실시 신고 요건
기업 현장 교사	기본 교육	1단계 (온라인)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본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그 외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의 기본교육 (1단계)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HRD 담당자		2단계 (집체)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HRD 담당자는 기본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그 외 HRD담당자는 최소한의 기본교육 (1단계) 이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 훈련실시를 안내 받았으며 이러한 훈련실시 의무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학습근로자 대우

가. 기업 내규 등에 따른 훈련(예정)직무 신규직원 급여 수준
: ()원/월

* 급여수준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 (매년 최저임금 변경 반영)

<2023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 월단위: =2,010,580원 (9,620원 x 209시간)

※ 209시간 = {(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x365일}/12개월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나. OJT 시간 포함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 () 시간

* 주당 근로시간은 통상 40시간 이하, 미성년자는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확약서 제출)

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 학습근로자 대우(일반근로자 대비)

☐ 우대(우대계획 :)

☐ 동등대우

*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III. 기업 여건의 적절성

1. 신용등급 및 기업규모

가. 신용등급 :

* 신용등급증빙 불가의 경우 '없음'으로 작성

* 필요시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관련 증빙서 제출 가능

나. 상시근로자 수 : 총 명

* 단독기업형 기업(50명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기업(20명 이상)

<예외>

① 최근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2. 기업의 근로조건

가. 설립기간에 따른 기업구분

☐ 설립 5년 이상 기업

☐ 설립 5년 미만 기업

나. 장기근속자 비율

☐ 70% 이상 ☐ 5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30% 미만

* 계산식

- (설립 5년 이상 기업) 고용보험 취득일 3년 이상 경과자 / 전체 피보험자 수 × 100

- (설립 5년 미만 기업) 기업 운영기간의 50% 근무자 수 / 전체 피보험자 수 × 100

3. 독자적 기술력 보유 (복수기재 가능) ※ 증빙자료 첨부

☐ 특허 ()건 (기술분야) ☐ 실용신안 ()건 (분야)

☐ ISO 인증()

☐ 정부지정 우수기술력 보유 기업 인정 ((년도))

* 강소기업, INNOBIZ, World Class 300 등 기업인정 현황 기재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IV. 훈련준비 상황

1. 기업현장교사 후보군 보유 ※ <기업현장교사 요건> 참조하여 체크

- 1) 인원 : ()명
- 2) 자격
- 연구경력 : 기관명(), 기간()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
 - 자 격 증 : ☐기능사 ()명 ☐산업기사 ()명 ☐기사 ()명
 ☐기능장 ()명 ☐기술사 ()명 ☐기타()
 - 동일 분야 현장 경력 3년 이상 ()명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9조)>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물적 인프라 현황

- 1) 훈련시설: ☐ 강의실 ☐ 실험실습실 ☐ 기타 ()
- 2) 훈련장비: 생산장비 외 별도 훈련장비 보유 (☐ 예 / ☐ 아니오)

V. 기 타

사업 참여경로(사업 정보 취득 경로) :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명 작성(기업발굴 전담지원기관 등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추천경로 반드시 작성)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VI. 안내사항(필독)

행정처분 통지 의무고지	■ 일학습병행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준용)하여, 일학습병행을 포함한 동 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처분 효력기간 중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기업이 중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범위에 따라 진행 중인 일학습병행 훈련 중단 또는 추가 훈련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일학습병행관련 행정처분 포함), 또는 고용노동부 공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산재다발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한 참여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금지	■ 본 사업에서는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근로자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또는 산재발생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강력하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기업에 신청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 중임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지정 이후라도 해당사실 발각되었을시 즉시 <u>지정무효</u> 및 <u>지정취소</u>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고용지원사업과 중복 의무고지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일학습병행을 중복 참여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따른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사업의 지원기준에 일학습병행과 중복지원을 금지한 경우 참여 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학습병행과 중복 참여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 허위작성·제출 금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 공고문 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작성하여 학습기업 지정받았을 경우 <u>지정취소</u>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미달시 지정취소 대상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학습기업 지정 후 상시근로자 수 최소요건, 신용등급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기업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 훈련실시 가능한 시설·장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방문 반드시 협조	■ 현장심사, 훈련모니터링 등 공단이 업무상으로 훈련실시장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u>훈련실시장소에 입장 가능</u>해야 하며, 기업 보안문제 등 이유 불문하고 공단이 훈련장소 방문 불가능할 경우 지정 제외, 훈련실시중단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_전산신청시 첨부

□ 신청기업은 아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답변이 "예"인 경우 참여 가능)

구분	세부내용		답변
기업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산재발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참여신청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행정처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학습근로자 채용 및 관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미성년자는 35시간)로 운영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는 가능		예 / 아니오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법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제42조(과태료) 조항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준비 및 운영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사 이수 및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HRD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훈련을 실시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훈련교재, 실습재료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 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훈련 실시여부·기간 등에 관해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본 사업장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 사업장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고 학습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학습기업의 지정 등)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정 또는 지정 후에도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훈련과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받은 경우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가능

2022년 월 일

기업명 및 대표자

(인)